

□ 공표 근거 및 목적

- (근거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66조*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

* 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 ① 시정조치, 과태료 부과 등 내용 및 결과는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.

* 영 제61조(결과의 공표) ②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(목적) 당사자·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경고적·예방적 효과 달성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법 질서 확립
- (경과) 그 동안, 법령에 근거하여 공표기준을 마련·시행하였으나, 그 기준이 엄격하여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고 공표 실적이 없음

□ 개선 방안

-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동시 해당할 경우 공표하는 현행 기준을, 총 7개 항목으로 세분화구체화하고 7개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할 경우 공표하도록 공표기준을 완화 개선

□ 개선 공표기준

- (기준) 아래 7개 항목 중 어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표(영 §61②)

① 위반내용 : 은폐·조작행위	② 위반정도 :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 원 이상 등
③ 위반기간 : 6개월 이상 지속	④ 위반횟수 :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
⑤ 피해범위 :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	⑥ 피해결과 : 2차 피해 발생 등
⑦ 시정조치 : 검사 거부·방해, 시정조치 미이행	

□ 공표 내용 및 절차

- (내용)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(영 §61①)
 - ① 위반행위 내용, ② 위반행위자, ③ 행정처분 내용 및 결과
- (절차) 다음 절차에 따라 공표함(법 §66①, 영 §61①·③)
 - ① 공표사실 사전 통보(안행부→공표대상자) ⇒ ② 소명자료 또는 의견수렴 및 위원회 송부(공표대상자→안행부→위원회) ⇒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(위원회→안행부) ⇒ ④ 홈페이지에 공표(안행부)

□ 향후계획

- 현행 법령에 의거 공표기준 조기 시행('14.8.7.)

■ 공표기준 신·구내용 비교표

현 행	개 선 안
아래 각 호(3개) 중 2개 이상에 동시 해당 하는 경우 공표	아래 각 호(7개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
① 위반 사유 및 피해 범위 - 중과실 • 다른 중대 위반행위를 은폐·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등①	① 위반내용 :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·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
• 위반사항을 방치하여 유출·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② • 주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·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②	② 위반정도 :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
- 대규모 • 유출·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⑤	⑤ 피해범위 : 유출·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
- 사회적 물의 • 재산상 손실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⑥ • 불법적인 매매·거래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⑥ •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등⑥	⑥ 피해결과 : 유출·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
② 위반 기간 및 횟수 - 2년 이상 • 위반행위 시점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③	③ 위반기간 :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
- 3년 내 동일 위반 2회 이상 • 동일한 위반사항 내용(안전조치, 동의 절차 등)을 행정처분 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④	④ 위반횟수 :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,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③ 개선 노력 - 개선 의지 • 위반행위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·방해하는 경우⑦ - 조치결과 미제출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⑦	⑦ 시정조치 : 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